

# 지가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 일부개정

## 1. 개정이유

도면 작성 및 활용 지침중 자료 수집이 원활하지 않거나 주관적이고, 모호한 부분은 삭제하여 규정 명확화

## 2. 주요내용

가. 도면작성 기준 및 기재사항 중 주관적인 부분 삭제(안 제3조 내지 안 제5조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국토교통부훈령 제1649호(2023. 8. 18.)

## 지가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 일부개정

지가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“중요 지형지물 및 용도지역·용도지구”를 “용도지역·용도지구”로 한다.

제4조제3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.

제5조제9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한다.

## 부 칙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지가현황도면의 내용) 지가 현황도면(이하 “도면”이라 한다)에는 개별공시지가의 조사·산정 및 검증 등의 업무에 필요한 지번, 지목 및 지가 등이 필지별로 기재되고, 해당지역의 행정구역명과 <u>중요 지형지물 및 용도지역·용도지구</u> 등에 관한 사항이 식별이 용이하도록 적절하게 표시되어야 한다.</p>	<p>제3조(지가현황도면의 내용) 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용도지역·용도지구</u>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4조(도면의 작성기준) ①·② (생략) ③ <u>도면에는 지번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당지역에 위치한 주요건축물과 공공시설물 등을 적절히 표시하여야 한다.</u> ④ ~ ⑦ (생략)</p>	<p>제4조(도면의 작성기준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<u>&lt;삭 제&gt;</u>  ③ ~ ⑥ (현행 제4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)</p>
<p>제5조(도면의 기재사항) 도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. 1. ~ 8. (생략) 9. <u>은행·경찰서 등 주요건축물과 도로·하천 등 공공시설물</u></p>	<p>제5조(도면의 기재사항) ----- ----- -----. 1. ~ 8. (현행과 같음) <u>&lt;삭 제&gt;</u></p>

10. ~ 12. (생략)

9. ~ 11. (현행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와 같음)